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- 93호

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8일

창원시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최근 폭염이 일상적인 기후위험으로 자리 잡으면서 폭염 및 자외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에 그늘 공간 조성·관리계획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그늘 공간 조성・관리계획 사항을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제9호)

나.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삭제함.(안 제5조제5항)

다.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(안 제10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(전화:055-225-5374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kimhk7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홍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

발의연월일 : 2026. 11. 18.

발 의 의 원 : 전홍표・곽은정・권순재・김동엽・김원일 류성국・문순규・박강우・박현재・변보미 서명일・성보빈・이우완・장병운・정은미 지상록・진형익・차중현・하경석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최근 폭염이 일상적인 기후위험으로 자리 잡으면서 폭염 및 자외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에 그늘 공간 조성・관리계획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그늘 공간 조성・관리계획 사항을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제9호)

나.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삭제함.(안 제5조제5항)

다. 표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・구조문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조례

창원시 조례 제 호

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 공간 조성·관리계획

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성·관리 등) ① (생 략)	제3조(조성·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조성·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폭염 대응을 위한 그늘 공간 조성·관리계획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) ① ~ ④ (생 략)	제5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0조(표창)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「창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.	<삭 제>

참고 **관계 법령**

■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공원녹지법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원녹지”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시공원, 녹지, 유원지, 공공공지(公共空地) 및 저수지

나. 나무, 잔디, 꽃, 지피식물(地被植物) 등의 식생(이하 “식생”이라 한다)이 자라는 공간

다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

2. “도시녹화”란 식생, 물,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,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공간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)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도시공원”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·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7조, 제19조,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20조, 제21조, 제21조의2,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, 제39조, 제40조, 제42조, 제46조, 제48조의2,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.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(이하 “도시자연공원구역”이라 한다)

4. “공원시설”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.

가. 도로 또는 광장

나. 화단, 분수, 조각 등 조경시설

다. 휴게소, 긴 의자 등 휴양시설

라. 그네,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

마. 테니스장, 수영장, 궁도장 등 운동시설

바. 식물원, 동물원, 수족관, 박물관,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

사. 주차장, 매점,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

아. 관리사무소, 출입문, 울타리,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

자. 실습장, 체험장, 학습장,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(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위한 시설

차. 내진성 저수조, 발전시설, 소화 및 급수시설,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

카.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5. “녹지”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,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.

제15조(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)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2. 생활권공원: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·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

나. 어린이공원: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

참고 **현행 조례**

■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, 어린이의 보건·안전·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터”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.
2. “놀이터 활동가”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놀이터 기획자”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.
4. “통합놀이터”란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조성·관리 등) ① 창원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성·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어린이놀이터 조성·관리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
2. 어린이놀이터 유지·보수계획
3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
4.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계획
5. 모래시설의 정비(교체, 뒤집기, 보충 등)계획
6.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계획
7. 다양한 수목식재(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)계획
8.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계획

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갈 것
2.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조성할 것
3.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·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

4.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

④ 시장은 장애·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,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예산 확보)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·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(이하 "실무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는 놀이터 기획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놀이터 기획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
2.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
3.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

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놀이터 활동가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.

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「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.

제7조(놀이터 기획자)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놀이터 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터의 조성·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
2. 어린이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
3.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시장은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·자격요건·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터 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놀이터 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자원봉사활동)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「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)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「창원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「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2조 삭제 <2024. 12. 20.>